

2025년도 한나그린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 장 입소이용과 관리규정(운영)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5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건강공단에서 등급 받으신 분 중 1,2등급 또는 3,4,5 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중 본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여 입소를 원하시는 분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만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기본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
- 2) 담당직원에게 불만이 있으면 관리 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3) 텔레비전 시청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한다(밤 10시 이후에는 자제).
- 4) 외출, 외박 시에는 직원에게 알리고 유사시 비상연락을 한다.
- 5)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
- 6) 화재 등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며 사전에 예방한다.
- 7) 시설을 아끼고 파손하지 않으며 물품을 낭비하지 않는다.
- 8) 음주,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 9)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의 손해배상을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시설로부터 정기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시 생활, 의료, 영양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입소비용 소개 (30일 기준, 비급여는 식재료비, 간식비입니다.)							2025년 기준수가		
구분	1일 이용료	월 이용료	급여비용			비급여 (식대)	총 시설이용료		
			일반20%	감경12%	감경8%		일반20%	감경12%	감경8%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321,000	863,700	646,620	538,08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02,070	201,380	321,000	824,460	623,070	522,380
3~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85,260	190,170	321,000	796,440	606,260	511,170
*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위 2.의 변경의 경우가 생긴 때 시설은 지체 없이 신원인수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기준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원인수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 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사항

1. 서비스의 내용

가. 일상생활 서비스

- 24시간 일상생활 케어서비스 및 목욕서비스
- 산책, 외출 및 말벗서비스

나. 의료 서비스

- 계약의사 진료
-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대면)	금액 (단위 : 원)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기초생활수급 0%
초진비용(18,410원)	3,680	2,200	1,470	0
재진비용(13,160원)	2,630	1,570	1,050	0

- 정기적인 촉탁의 진료서비스 및 어르신 특성에 맞는 전문 간호 서비스
- 매일 활력징후 및 혈당 관리, 투약관리
- 정기 건강검진 및 응급대응, 후송체계 서비스

다. 재활치료 서비스

- 물리치료 및 관절 및 근력증진을 위한 운동서비스

라. 영양 서비스

- 전문 임상 영양사에 의한 식이 상담
- 어르신 질환별, 식사 능력별 맞춤형 식사제공

마. 사회복지 서비스

- 여가지원 프로그램 : 인지 프로그램, 신체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생신잔치(월1회), 시장보기(월2회), 나들이, 절기행사

- 신앙·문화프로그램 : 예배, 음악회공연, 영화감상, 특별프로그램 등
- 교육 프로그램 : 노인인권보호교육 등

바. 가족지원 서비스

- 보호자 간담회(연2회), 소식지 발송(연1회)

사. 지역사회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 후원개발 및 조직, 홍보사업,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실습지도

2. 비용부담의 사항

가. 일상생활 서비스

일상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 20%에 포함하며 이미용의 경우 본인이 특별한 서비스를 이미용실에서 원하는 경우 모시고 가서 본인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외부 봉사단체의 봉사료 이용케 한다.

나. 의료 서비스

- 1년에 1회 정기건강검진은 실비로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본인의 필요에 의한 약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 응급상황으로 엠블란스로 병원 이동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 영양 서비스(2025년 기준)

- 식사는 1식 3,200원이며 30일 기준으로 288,000원이다.
- 간식은 1일 1,100원이며 30일 기준으로 33,000원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

-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들이 등 외출 시 식사비와 입장료 등 실제 실비를 지급한다.

1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2인용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1인실 상급침실료는 월250,000원, 2인실 150,000원이다(2025년 기준))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 (의료서비스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축탁의)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시설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출처 : 한나그린힐 운영규정